

2023년 대비 임예진 객관식 관세법 정오 사항

* 484페이지 29번 해설 수정

2.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
→ 2. 법 제25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

* 492페이지 40번 해설 수정

2천만원 이하의 벌금(타만, 과실안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)
→ 단서 삭제

* 627페이지 90번 해설 전체 수정

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

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
-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, 양수,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
- ③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- ④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
- 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⑥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(대표자 및 영 제259조의 5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)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법 제279조(양벌규정) 또는 제3호·제4호에서 정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 - ㉠ 법 제268조의2, 제269조, 제270조, 제270조의2, 제271조, 제274조 및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
 - ㉡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 - ㉢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, 「대외무역법」, 「외국환거래법」,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 - ㉣ 「관세사법」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